

법무부 시설담당관실-283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예산처 공고 제2026-15호)」에 따라 “법무부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 지침(법무부 시설담당관실-2839호, 2026. 4.23.)”을 제정합니다.

2026년 4월 23일

법무부장관

## 법무부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예산처 공고 제2026-15호)」에 따라 법무시설 조성업무 중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민간제안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이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 ②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제시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한 개략적인 사업계획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 ③ “사업계획서”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제출 이전,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 ④ “사업계획서평가”란 (이하 “평가”라 한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우수제안자에게 “우선협약대상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⑤ “우선협의대상자”란 법 제9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평가결과에 따른 최선순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장관이 주관하는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의대상자 선정과정에 적용한다.

**제4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공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평가 시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법무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선정위원의 수는 7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의 규모·특성 등에 따라 민간투자전문가 및 내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설명과 평가진행을 위해 간사를 둔다.

**제6조(배점기준)** ① “사업계획서평가“에 대한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사업계획서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등)** ① 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마감 이후에는 추가·교체·수정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대표사 및

참여사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서 작성은 [별표1]을 따르며, 절대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공동수급체(컨소시엄)는 건설법인과 설계법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는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제출 전까지 운영 및 재무분야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협의대상자의 선정)** ①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이면서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1개 사인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때 평가위원회가 사업수행 적격 여부를 심의하며, 적격으로 의결될 경우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평가결과 최고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사업관리계획, 공공성 및 차별화 순서로 해당 평가항목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하되, 위 2개 평가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우선협의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우선협의대상자의 지위 및 제안서 제출 시기)**

①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는 법무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 법무부장관이 최초제안자를 지정·통보한 시점부터 법적자격이 부여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우선협의대상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협의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 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고 판단될 경우

3.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4. 법 시행령 제35조의 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시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2조(우선협의를대상자 지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협의를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 에 따른 결격사유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된 기한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해당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고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법무부 시설담당관실-2839호, 2026. 4. 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개정 당시 이미 공고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성 평가	사업 계획 (70)	사업관리 계획 (15)	▪ 사업관리 및 리스크관리 계획	10
			▪ 과업수행 세부계획 (공정계획, 수행기법, 인원투입계획 등)	5
		설계계획 (20)	▪ 작품의 예술성 (창의성과 독창성 등)	5
			▪ 설계의 합리성 (기능성, 편의성, 효율성 등)	5
			▪ 경제성 및 공공성 (경제성, 자재사용 및 에너지절약 계획 등)	5
			▪ 계획의 적정성 (법규·환경 등에 대한 검토 및 적용)	5
		시공계획 (20)	▪ 공정관리 계획 (공기단축방안 등)	8
			▪ 품질관리 계획 (자재 및 건축물 생애주기 고려 등)	4
			▪ 안전관리 계획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대책 등)	4
			▪ 민원예방과 갈등관리 및 환경친화적 시공 계획	4
		공공성 및 차별화 (15)	▪ 차별화 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속 편의시설 제안, 사업 차별화 등)	10
			▪ 재무 계획 (비용산정 및 자금조달 계획 등)	5
		정량 평가	사업 수행 능력 (30)	수행 능력 (15)
경영 능력 (10)	▪ 건설법인 시공능력평가(시공능력평가액)			10
신인도 (5)	▪ 공동수급체 신용평가등급(출자지분에 의한 평가) ▪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제제 지정기간			5

## <부표1>

#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가. 공동수급체(권소사업) 자격

- 1) 공동수급체는 건설법인과 설계법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2) 건설법인의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명기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한다.
- 3) 설계법인의 자격은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업체에 한한다.

### 나. 공동수급체(권소사업) 사업수행실적

- 1) 건설법인 :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당해 사업계획서 평가 대상 연면적의 1/2 이상인 시설의 시공실적
- 2) 설계법인 :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당해 사업계획서 평가 대상 연면적의 1/2 이상인 시설의 설계실적  
- 당해사업이 신·증축인 경우 신·증축 사업만 해당되며, 리모델링 시설은 제외한다
- 3)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용역완료 또는 준공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4) 사업수행실적은 공인기관 및 발주처의 확인 등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자료에 한한다.
- 5) 대상별 정량평가 기준

구분	1건 이하	2건	3건	4건	5건이상
건 설	6	7	8	9	10
설 계	3	3.5	4	4.5	5

※ 건설법인, 설계법인이 2개 사 이상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해당 법인별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며, 소수점 발생시 버림한다.

### 다. 건설법인 시공능력평가

- 1) 건설법인의 시공능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연도별 시공능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하며, 적용일은 당해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일로 한다.
- 2) 조달청공고 제2026-41호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1등급 시공사 순위의 1/2 순위 까지를 만점으로 한다.

구분	1등급 순위 1/2 까지	1등급 순위 3/4 까지	1등급 순위 4/4 까지	1등급 외
점수	10	9	8	7

※ 조달청 공고지침 변경 시 변경된 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 순위 결정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결과 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한다.

※ 건설법인 중 대표건설법인의 순위만 평가한다.

## 라. 공동수급체 신인도 평가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점수를 부여함
- 3)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에 한한다.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등급은 대표 건설법인만 평가한다.
- 5) 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대표 건설법인만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1	AAA, AA+, AA0, AA-	5
A+, A0	A2+, A20	A+, A0	4.8
A-, BBB+	A2-, A3+	A-, BBB+	4.5
BBB0, BBB-이하	A30, A3- 이하	BBB0, BBB- 이하	3.0
미제출			0

### 6)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협회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정성평가 기준

### 1) 등급별 평가기준

등급	평가기준
수	평가요소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그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창의성이 있어 사업시행 시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우
우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시키고 있고, 일부 법무부 협의 또는 추가적인 계획 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미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겨우 만족시키고 있거나, 계획이 다소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의를 통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양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계획이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의를 통한 구체화에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경우
가	평가요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2) 등급 및 점수 배분표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사업 관리 계획 (15)	사업관리 및 리스크관리	10.0	9.0	8.0	7.0	6.0	
	과업수행계획	5.0	4.5	4.0	3.5	3.0	
	소 계	15.0	13.5	12.0	10.5	9.0	
설계 계획 (20)	작품의 예술성	5.0	4.5	4.0	3.5	3.0	
	설계의 합리성	5.0	4.5	4.0	3.5	3.0	
	경제성 및 공공성	5.0	4.5	4.0	3.5	3.0	
	계획의 적정성	5.0	4.5	4.0	3.5	3.0	
	소 계	20.0	18.0	16.0	14.0	12.0	
시공 계획 (20)	공정관리 계획	8.0	7.2	6.4	5.6	4.8	
	품질관리 계획	4.0	3.6	3.2	2.8	2.4	
	안전관리 계획	4.0	3.6	3.2	2.8	2.4	
	민원방지 및 환경친화	4.0	3.6	3.2	2.8	2.4	
	소 계	20.0	18.0	16.0	14.0	12.0	
공공성 및 차별화 (15)	차별화 방안	10.0	9.0	8.0	7.0	6.0	
	재무계획	5.0	4.5	4.0	3.5	3.0	
	소 계	15.0	13.5	12.0	10.5	9.0	

3) 참여사 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2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 10개 참여사를 초과할 경우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비율로 배분

※ 1개 참여사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사 별 배분표 미적용

[별지 1]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1. 제출서류명세

- 1) 사업계획서 : 10부
- 3) 참여신청서 및 정량평가 서류 :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1) 페이지 수 : 총 50매 이하(표지, 목차 제외)
- 2) 인쇄 및 제본
  - 가) 용지크기 : A3(297mm/420mm)
  - 나) 재 질 : 백상지(80g/m<sup>2</sup>), 단, 표지는 스노우지(흰색, 무광, 250g/m<sup>2</sup>)
  - 다)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단면 인쇄
  - 라) 제본방법 :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A3 횡방향 좌측에 제본)
- 3)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 (1) 사업관리 계획
    - (가) 사업전반 관리계획 (계획, 시공, 운영 기간을 포함)
    - (나)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계획  
(민자적격성·재무·설계·시공·운영·민원 등)
    - (다) 과업수행 세부계획 (공정계획, 수행기법, 인원투입계획 등)
  - (2) 설계 계획
    - (가) 설계개요 및 시설규모
    - (나) 설계의도 및 주안점
    - (다) 각종 법규 및 조례검토, 공법설명(특수공법 적용 시), 추정공사비(경제성 검토)
    - (라) 계획도면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 (3) 시공 계획
    - (가) 공기단축방안을 포함한 공정관리 계획
    - (나) 자재,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품질관리 계획
    - (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대책,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원배치 계획

- (라) 갈등관리를 위한 민원예방·해소대책
- (마) 환경친화적인 시공계획
- (4) 공공성 및 차별화 계획
  - (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해, 시공사·자재선정 등 자금투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나) 부속·부대시설 제안 등 사업차별화 대책(시설개요 총괄표 반영)
  - (다) 비용산정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재무계획(총사업비 산출표, 운영비용 산출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 동일 할 것)

### 3. 참여신청서 작성 방법

-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 2) 인쇄 및 제본
  -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 나) 재 질 : 백상지(80g/m<sup>2</sup>), 단, 표지는 스노우지(흰색, 무광, 250g/m<sup>2</sup>)
  - 다)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단면인쇄
  - 라) 제본방법 : 상철(끈이나 철선 미사용, A4용지 종방향 상단부분 제본)
  - 마) 참여신청서 제본순서
    - (1) 평가서 표지 (양식 1)
    - (2) 참여신청서 (양식 2)
    - (3) 사업계획서 참여사 해당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대표사, 참여사), 건축사사무소등록증, 토목·건축 공사업등록증 등
    -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3)
    - (5) 자기평가서(양식 4)
    - (6) 유사사업수행실적 (양식 5)
    - (7) 입찰참가 제한기간 (양식 6)
    -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양식 7)
-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의 「원본대조 필」을 날인하여야 함

#### 4) 기타 사항

- 가)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함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다) 각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서 평가공고일로 함.



“양식 1”

평가번호	
------	--

## 사업계획 평가서

공고번호 :

사 업 명 :

수요기관 : 법 무 부

업 체 명 :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명]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 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목차 및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양식 2”

##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평가서 제출의 건

---

1. 아래 공고에 대한 “사업계획평가서” 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공고번호 :

나. 사 업 명 :

2. 본 평가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귀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1부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파일(USB) 1부. 끝.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전화 ,팩스 )

“양식 3”

##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공동수급비율	비 고
대표사					%	
참여사					%	
참여사					%	
계					100%	

- 붙임 1. 공동수급협정서 및 각 참여업체 증빙서류  
2. 대표자 선임계

“양식 4” 자기평가서

## 자 기 평 가 서

구 분	업 체 명	사업명/등급	연면적/공동수급비율	평가점수	
사업 수행 능력 (30)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설법인명)			
	신인도	(건설법인명)			
업체명			도급순위	평가점수	
경영능력	(건설법인명)				
계					



“양식 6” 입찰참가 제한기간

## 업체 입찰참가 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계					

첨부 : 분담된 면허와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 할 것.

“양식 7”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양식 8”

## 시설개요 총괄표

구 분		주 요 내 용		
대지 조건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사업 개요	사업방식	BTL, BTO, 혼합형 등		
	총사업비			
	총사업기간			
건축 개요	도입용도			
	용적률		법정 :	
	건폐율		법정 :	
	주차대수		법정 :	
	높이/층수			
층별 면적 개요	구분	면 적	비율	세부시설
	합계			
	옥외 시설		-	

년    월    일

신청자(대표사)    업체명

대표

(인)

“양식 9”

## 총사업비 산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집기비품 및 장비에 한함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기 타		
총사업비		

년      월      일

신청자(대표사)    업체명

대표

(인)

< 참고 >

-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작성
- 본 기획제안 공모의 사업비 규모 산정을 위한 추정 사업비의 평가에 참고하되, 우선협약의 대상자로 선정후 본 제안서 제출 시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제출 필요
- 공고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시(물가변동비, 건설이자 제외)하며, 제안한 총사업비의 5%를 자기자본으로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분기별 자금조달계획을 함께 제시할 것

“양식 10”

## 운영비용 산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20년	연간
운영 관리비	인 건 비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안전진단비			
	보 험 료			
	기 타 경 비			
	소 계			
유지 관리비	유지보수비			
	교 체 비			
	소 계			
운영비용				

년 월 일

신청자(대표사) 업체명

대표

(인)

**< 참고 >**

- 본 공모의 운영비용 산출은 평가에 참고하되,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 후 본 제안서 제출 시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제출 필요
- 공고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30년 및 연간 표준운영비용 제시할 것